

1. 개정 이유

2019. 5. 14.에 발표한 「국민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버스분야 발전방안」의 이행을 위하여 일반 광역버스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고, 국가사무인 광역급행형 시내버스를 포함하여 준공영제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가에서 관리하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와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의 관할관청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할관청 변경(안 제3조)

영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광역급행형·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경우 면허 또는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이후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장하도록 하되,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해당 노선의 기점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기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장하도록 함.

나. 한정면허 범위 확대 등(안 제17조)

한정면허 대상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을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선 신설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다. 탄력 운행 범위 확대(안 제33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경우 수송수요에 따라 운행 횟수·대수의 증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경기도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장한다.

제3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광역급행형·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경우 면허 또는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이후 :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다만,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해당 노선의 기점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기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그 사업을 관장할 수 있다.
2. 주사무소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에 있는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 인접한 도의 도지사

제5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영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광역급행형·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제17조제1항제1호라목 중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을 “영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광역급행형·직행좌석형”으로 하

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내버스운송사업”을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신규 노선 또는 영 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2호마목1)부터 3)까지 중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을 각각 “(영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광역급행형·직행좌석형”으로 하고, 같은 목 4) 중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을 “영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광역급행형·직행좌석형”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관할관청)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또는 이 규칙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관장하는 경우 외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장한다. 다만,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경우 면허 또는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이후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그 사업을 관장하고, 주사무소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에 있는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인접한 도의 도지사가 그 사업을 관장한다.	제3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관할관청) ① ----- ----- ----- ----- ----- ----- ----- ----- ----- ----- 다만, <u>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장한다.</u>
<신설>	1. 영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광역급행형·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경우 면허 또는 사

<신 설> ② (생 략) 제5조의2(의견 청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버스운송사업에 관하여 노선의 신설 또는 변경이나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를 하려는 때에는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생 략) 2.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u>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u>	<u>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이후 :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다만,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해당 노선의 기점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기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그 사업을 관장할 수 있다.</u> 2. 주사무소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에 있는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 <u>인접한 도의 도지사</u>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의견 청취) ----- ----- ----- ----- ----- ----- -----. 1. (현행과 같음) 2.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u>영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광역급행형·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u>
--	--

구분에 따른다.	-----.
1)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	1) -----
여 고시하는 시·도의 구	-----
역에서 해당 운행계통의	-----
1일 운행횟수가 60회 이	-----
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
중 40퍼센트(운행형태가	-----(<u>영 제37조제</u>
<u>광역급행형인</u> 시내버스	<u>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u>
운송사업의 경우에는 50	<u>분에서 규정한 광역급행</u>
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	<u>형·직행좌석형</u> -----
또는 운행대수의 증감	-----
2) 해당 운행계통의 1일 운	2) -----
행횟수가 10회 이상 60회	-----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	-----
간 중 30퍼센트(운행형태	-----(<u>영 제37조</u>
<u>가 광역급행형인</u> 시내버	<u>제1항제1호 각 목 외의</u>
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4	<u>분에서 규정한 광역급</u>
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	<u>행형·직행좌석형</u> -----
수 또는 운행대수의 증감	-----
3) 해당 운행계통의 1일 운	3) -----
행횟수가 5회 이상 10회	-----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	-----
간 중 20퍼센트(운행형태	-----(<u>영 제37조</u>
<u>가 광역급행형인</u> 시내버	<u>제1항제1호 각 목 외의</u>
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3	<u>분에서 규정한 광역급</u>
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	<u>행형·직행좌석형</u> -----
수 또는 운행대수의 증감	-----
4) <u>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u>	4) <u>영 제37조제1항제1호 각</u>
<u>인</u> 시내버스운송사업의	<u>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u>
경우로서 11시부터 17시	<u>광역급행형·직행좌석형</u>
사이에 해당 운행계통의	-----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	-----
간에 큰 차이가 인정되는	-----
경우에는 해당 시간 중 2	-----
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	-----
또는 운행대수의 감소	-----
바. ~ 아. (생략)	바. ~ 아. (현행과 같음)
3. ~ 6. (생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략)	② ~ ⑧ (현행과 같음)